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6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[ ]총포 [ ]도검 [ ]화약류 [ ]분사기 [ ]전자충격기 [ ]석궁 [ ] 제조업 [ ] 판매업 [ ] 임대업 [ ] 저장소 폐업(폐지)·휴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(3근무시간 이내)

허가 사항	허가번호	
	허가연월일	
허가받은 자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 (전화번호 :)	
	사무소 소재지	
	사업명	
폐업·휴업 사유	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) (제조업·판매업·임대업·저장소)의 폐업(폐지)·휴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귀하

첨부서류	허가증 및 완성검사 합격증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